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오진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해수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오진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해수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오진석

오진석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정진택 

심사위원 유경준 

심사위원 권해수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오 진 석

사회의 원초적인 단위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서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가장 흔한 경우이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고, 또한 가해자가 아동이 믿고 의존하는 보호자나 성인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사회 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보임으로 올바른 실태 분석을 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관련기관의 기존 조사 결과, 각종 보고서, 세미나 자료, 전문 학술지 등을 참고로 실태를 분석 하였다.

아동학대의 결과로는 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발달지연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유발 등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을 갖는다. 그리고 아동학대

는 청소년기의 탈선 및 범죄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의 정립과 학대 유형별 개념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신고제도의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의 제거와 아동보호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넷째,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과 사후적 보호체계가 중심이 되어 보호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 확보와 전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동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복지법, 아동권리, 아동보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아동학대의 정의	5
1. 아동학대의 일반적 개념	5
2. 아동학대의 정의	6
제 2 절 아동학대의 발생 경로	9
1. 부모 영역	10
2. 아동 영역	12
3. 가족 영역	13
4. 지역사회 영역	14
5. 사회문화적 영역	15
제 3 절 아동학대의 유형	16
1. 신체학대	16
2. 정서학대	17
3. 성학대	18
4. 방임	18
제 4 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분석의 틀	19
1. 분석틀	19

제 3 장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및 평가	22
제 1 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	22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2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30
제 2 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42
1. 법·제도적 문제점	42
2. 사회·문화적 문제점	48
3. 행정·서비스상의 문제점	51
제 3 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평가	55
1. 실정법적 근거	55
2. 업무흐름	60
제 4 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62
제 1 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62
1.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조항	62
2. 아동보호체계	64
3. 아동학대의 방지정책	65
4.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66
제 2 절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방안	67
1.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국민 의식의 제고	67
2. 아동학대의 교육적 개선방안	68
제 3 절 행정·서비스 측면의 개선방안	72
1.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준사법적 권한 부여	72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노력 강화	72
3.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72
4.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73
 제 5 장 결 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9



【 표 목 차 】

[표 1-1] 연구흐름도	4
[표 2-1] 각 법률상에서의 아동 개념	7
[표 2-2] 아동학대 발생경로 중 부모영역	12
[표 2-3] 아동학대 발생경로	15
[표 2-4]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 연구 절차	20
[표 2-5] 본 연구 분석의 틀	21
[표 3-1] 연도별상담신고 접수 건수	22
[표 3-2] 연도별피해아동보호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25
[표 3-3] 연도별상담신고접수경로유형	26
[표 3-4] 연도별신고자유형	28
[표 3-5]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1(중복학대별도분류)	31
[표 3-6]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2(중복학대미분류)	32
[표 3-7] 연도별피해아동가족유형	33
[표 3-8] 아동학대발생장소-2009년 기준	35
[표 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36
[표 3-10]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37
[표 3-11]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39
[표 3-12] 유형별피해아동성별	41
[표 3-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52
[표 3-14]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61
[표 4-1]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69
[표 4-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70
[표 4-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71

【 그림 목 차 】

<그림 3-1> 연도별 상담신고건수	23
<그림 3-2> 전체 상담신고 접수 건수	24
<그림 3-3> 연도별아동학대상담신고현황	25
<그림 3-4> 연도별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25
<그림 3-5> 연도별상담접수경로유형	26
<그림 3-6> 연도별신고자유형-신고의무자	29
<그림 3-7> 연도별신고자유형-비신고의무자	30
<그림 3-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1(중복학대별도분류)	32
<그림 3-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2(중복학대미분류)	33
<그림 3-10> 피해아동 가족유형-2009년도	34
<그림 3-11> 아동학대발생장소	36
<그림 3-12>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37
<그림 3-13>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40
<그림 3-14> 유형별피해아동성별	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그 유형과 빈도 그리고 심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가정의 빈곤정도, 부모의 교육 정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학대받고 성장한 아동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지구촌의 밝고 맑은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는 하루 속히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오던 우리의 형편이나 문화 속에서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인 체벌이나 훈육을 위한 폭언 등은 대체적으로 용납되고 오히려 장려되는 입장이었다. 특히 ‘귀한 자식일수록 사람을 만들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는 사고가 일반인들을 깊게 지배하고 있어서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이나 문제의식은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

또한 전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권리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실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져왔다. 이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아동 자체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였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비롯하여 방임, 유기와 같은 여러 형태의 아동학대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희랍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²⁾

아동학대는 행위 자체의 비인간성, 비윤리성뿐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단기에 걸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학대자의 처벌과 아울러 예방

1) 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 제1호』, 1993, p.23.

2) 서금희,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불행히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여 왔으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은 존엄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시기 아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하는 것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성장을 좌우하게 된다. 즉, 부모는 교사이자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두려움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피해아동은 보호, 제공자로부터 학대를 받게 됨에 따라 자신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피해 아동은 보호 제공자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언제 학대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³⁾ 우선 아동은 경우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아동학대는 최근에 새로이 발견된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가정 내 사안, 즉 흔히 가정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공개되지 못하고 묻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문제는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의 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아동은 존엄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상은 학대받은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의 일탈행위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현황파악 그리고 관련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3) 김서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벤처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

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임상적 연구보다는 이전에 실시된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 연구와 아동학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및 관련기관의 세미나 자료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정의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사회 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보임으로 올바른 실태 분석을 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관련기관의 기존 조사 결과, 각종 보고서, 세미나 자료, 전문 학술지 등을 참고로 실태를 분석 하였으며, 한국 아동학대의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 구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범위와 내용은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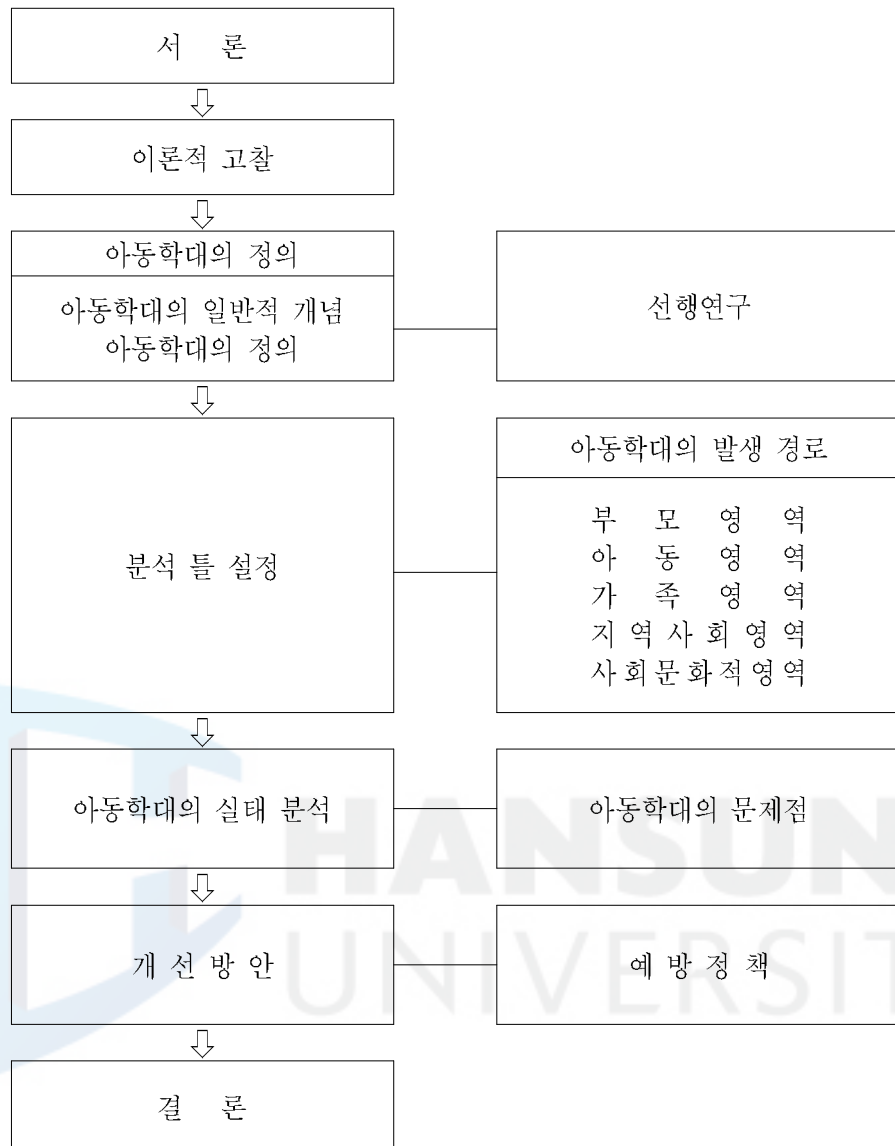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본다. 문헌을 중심으로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아동학대 유형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학대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구성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신고자유형, 아동학대 사례유형, 피해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제도적의 문제점, 사회·문화적 문제점, 서비스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넷째, 위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1-1] 연구흐름도



제 2 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일반적 개념

아동학대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 관련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⁴⁾

Kempe(1962)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⁵⁾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 학대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정의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편이다.⁶⁾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 (act of commission)라고 본다면

4) 허남순, 『한국아동복지학』, 서울 창간사, 1993, p.24.

5) 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8.

6) 최 철, 「한국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6.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 (act of omission)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인 부모를 비롯해서 조부모, 일가친척, 가정부, 교사 등의 사람들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양육 및 교육환경, 즉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의 주변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자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미치는 환경을 말한다. 즉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버림 받는 상태, 이른바 방임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⁷⁾

협력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유기는 의도적인 포기라고 볼 수 있으며, 복합적인 영역이란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정서적 학대에 수반되는 등의 경우로써 그 상호간의 분별이 어렵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⁸⁾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아동학대의 정의

1) 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988년 5월 5일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9조에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아동학대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⁹⁾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국이 함께 서명하고 합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

7) 이소희,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2003, pp.15-16.

8) 정혜원, 「가정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12-15.

9) 장영미, 「아동학대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규정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에서 불리어지는 아동의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아’, ‘어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등으로 다양하다.

[표 2-1] 각 법률상에서의 아동 개념

법률	호칭	연령 구분	목적
아동복지법	아동 제2조 1항	18세 미만인 자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그 복지를 보장함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제2조 1항	19세 미만인 자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소년법	소년 제2조	20세 미만인 자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제2조 1항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보호와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모자복지법	영유아 제2조 2항	출생 후 6년 미만인 자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년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
민법	미성년자 제4조	20세 미만인 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제51조 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도로교통법	어린이, 유아 제11조	어린이 : 13세미만 유 아 : 6세미만	

(자료출처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¹⁰⁾ 제 2조 제 4호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10) 1961년 12월 ‘아동복지법’으로 제정 공포 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 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 되었고,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22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 사회 복지적 정의

사회복지적 정의는 사회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내려지는 정의로써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학대, 정서적 상실, 부모의 무능력이나 궁핍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과 지역 사회적 학대를 포함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학대를 설명하고 있다.

Park와 Collmer는 지역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의 정의를 내렸다.

즉 "아동의 대우에 관한 지역 사회적 기준에 위배되는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된 비우발적 신체적 상처"라고 정의하였다.

Fantana는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리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간에 이것을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 하였다.

3) 의학적 정의

1860년 법의학 교수 Anvroise Taurdiou가 피학대 증후군을 시체 부검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처음으로 이 증후군이 기술되었으며 1960년대의 Helfer와 Kempe가 쓴 저서에서 '피학대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 대해 밝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고조 되었다.¹¹⁾ Helfer와 Kempe가 내린 정의를 보면 "뚜렷하게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에게는

11) 한국청소년연구소,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소 자료집』, 1994, pp.7-8.

피학대 중후군 (battered child syndrome)이 보인다.” 고 하면서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입은 신체적 상처를 학대로 정의 하였다. Kempe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확대되어 1964년 Fontana는 부당한 아동취급이라는 개념에 정서 박탈, 태만, 방임, 영양부족을 포함시켰으며, 1974년 Gil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더 확대하여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의료적 관점의 정의는 객관적 기준과 명백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배제되어 있다는 점과 범위가 신체손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비교해 보았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법적 제도적 예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 2 절 아동학대의 발생 경로

학대행위자의 83.3%이상이 부모이고¹³⁾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거나 실직 상태이고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과 질환, 부모가 약물이나 알콜 중독이 있는 경우도 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아동이 조산아이거나 정신지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되는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

12)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1, p.212.

13)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20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4.

는 가정 또는 사회 요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도출된 아동학대 관련 요인들을, 가장 최근의 관점(생태학적)에 따라 부모 영역, 아동 영역, 가족 영역, 지역사회 영역, 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부모 영역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중독 및 질환 문제, 가족·종교 문제, 성격 및 기질 문제 등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모 영역과 관련해 어린 시절 피학대 경험, 나쁜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 등이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격적·기질적 문제를 살펴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밝혀진 것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하며 우울 성향을 나타내고, 자신보다 주위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기적이고 자기도취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가학적인 형태의 양육태도를 취하는 불안정한 성격을 보인다고 한다.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알코올 및 약물남용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떨어뜨려 분노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충동성 억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로서의 판단능력을 저해시키고,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물리적 필요보다 약물이나 알코올을 얻는데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알코올이 의식·기억력·감정조절·충동조절 등을 변하게 만들어 자녀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들의 음주빈도가 잦은 경우에 구타나 방임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체벌, 구타, 정서학대, 방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음주를 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동을 학대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세대 간 전승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하여 이를 학습하게 되면 후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중 30~60%는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 이는 학대가 대를 이어 계속 되는 악순환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대 받은 경험이 학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

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학대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우선 방임과 연결되는 유형인 ‘소원한 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애착의 결여와 통제·감독의 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학대와 관련된 권위주의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는 징벌성, 강압, 그리고 따뜻함과 지지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따뜻함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따뜻함은 자녀양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이 요인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잘못된 양육방식, 즉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아동보호기관의 보고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의 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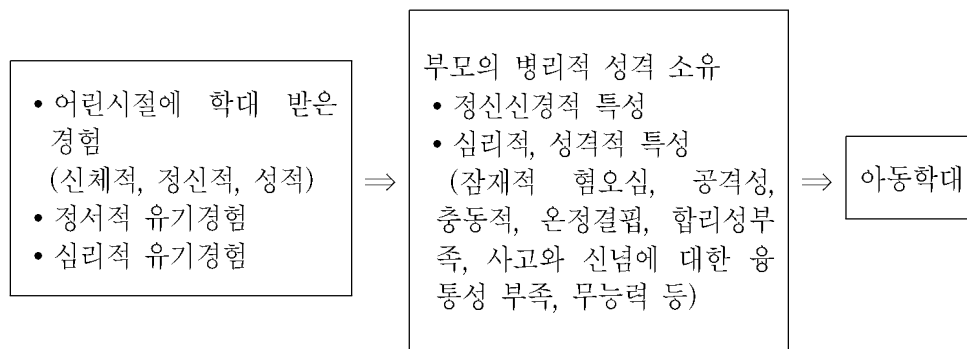
이밖에도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처벌적인 훈육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아동학대의 발생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늘 과로한 경우가 많은 취업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부모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앓게 되면 극심

14)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8.

한 스트레스가 쌓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한 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아동학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여 도식화 하면 [표 2-2]과 같다

[표 2-2] 아동학대 발생경로 중 부모영역



2. 아동 영역

최근에는 부모의 특성과 함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아동 개인의 특성에 관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문제행동, 까다로운 성격 및 기질, 임신 및 출생에서의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경향이 높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신체적 질병이나 만성적 장애, 정신지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장애아동의 부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양육 역할과 양육 태도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이 없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장애 아동이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서도 아동의 장애가 학대 발생 사례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임을 밝히고 있어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행동특성도 학대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피학대 아동은 종종 문제행동(공격적인 행동, 반항적인 행동)이 있거나 자기행동의 통제에 있어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학대적인 부모는 비학대적인 부모에 비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문제 삼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아동은 부모로부터 처벌이나 강요의 훈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부모가 아동을 체벌하는 대부분의 이유로 형제와의 갈등, 숙제를 안 함, 성적 저조, 부모에 대한 대꾸, 늦은 귀가, 예절이 바르지 못함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자녀의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이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대의 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가족 영역

아동학대와 관련한 가족특성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조적 특성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가족 형태를 들 수 있고, 기능적 특성으로는 부부불화, 갈등적인 가족 분위기 등이 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아동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제적 압박감이 가족원의 심리적 기재를 악화시켜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빈곤과 아동학대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가 실직 상태일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결손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모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아동양육에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유형 중 한 부모 가정의 전체의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방임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혀, 한 부모 요인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¹⁵⁾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불화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화와 갈등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즉, 부부간에 불화가 많은 가정은 그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키기 쉬워 아동이 신체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부부간에 갈등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화풀이로 자녀를 구타하거나 아동양육에서도 자녀구타가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불화는 아동학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영역에 속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지지망 결여를 들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가정을 조사 연구하는 임상가들은 많은 가정들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고립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의 부담으로부터 짐을 덜기 위하여 친구, 이웃, 그리고 친척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친구나 친척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부모들은 가족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성을 내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유형으로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하여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일상적인 기능과 만족감을 위해 이웃이나 친지들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지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부모는 양

15)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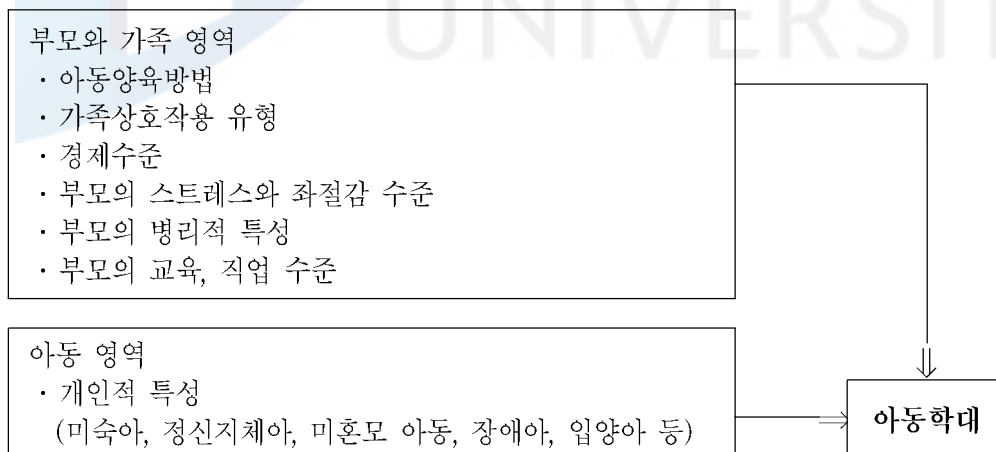
육자의 역할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아동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다.¹⁶⁾

5. 사회문화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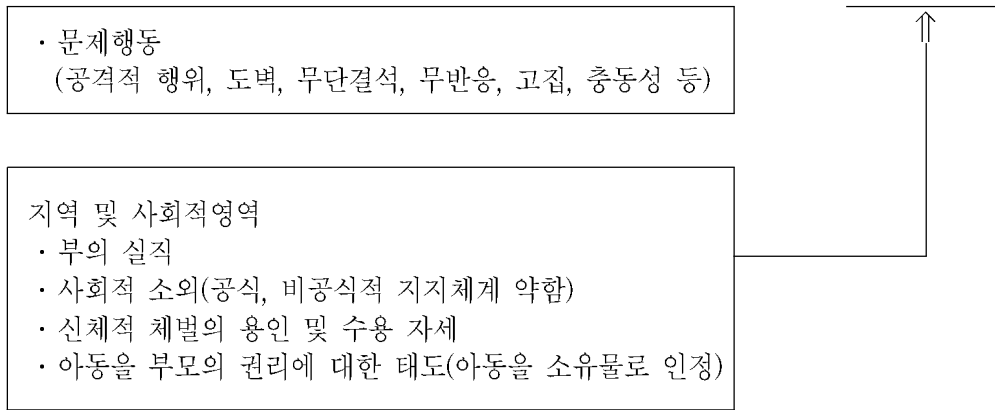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영역은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의 문화나 신념,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요인으로는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체벌이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감정을 실어 때를 때려도 그것이 교육을 위한 매이지 결코 학대 차원의 구타로 여기지 않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의 보편적 사용에 관용적이며, 문화적 규제가 적은 사회 분위기이거나, 부모가 체벌의 효과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상에서 다섯가지 항목의 아동학대의 발생 경로를 도식화 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아동학대 발생 경로



16) 박영주, 「아동학대 인식에 기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1.



제 3 절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¹⁷⁾로서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서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신체학대에 포함되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다.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있다. 신체학대는 멍이나, 화상, 골절, 뇌 손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

피학대아동이 가혹한 처우에 직면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술을 개발하게 되는데, 피학대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

17)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으로 '가성숙'의 행동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놀이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자기 비판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급성불안 반응, 자학적, 파괴적 행동과 근본적 신뢰를 이루지 못한 병적 대인관계를 보이기도 한다.¹⁸⁾

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¹⁹⁾로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의 복지에 관해 관심을 보이며, 활발히 도움을 찾아 나서는 반면에, 학대하는 부모들은 이러한 도움을 거절하거나 아동의 복지에 관해 징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 낸다.²⁰⁾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식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이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이 성장하여 사람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한다.

18) 홍전희,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2.

19)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20) 정용충,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5호』, 2001, p.4.

3. 성학대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²¹⁾로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적 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성학대는 성적 폭행과 성적 착취, 근친상간으로 구분된다.²²⁾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방임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²³⁾로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21)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22) 박은순,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성」, 『대한간호 제28권 1호』, 1999, p.23.

23)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를 말한다. 방임은 다른 아동학대유형과 달리 그 심각성이 최근 들어 부각되었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예방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²⁴⁾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방임된 아동은 늘 불행해 하고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건강상의 문제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방임의 유형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그리고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 하여 보면,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직접적인 신체학대는 감소하고, 반면에 간접적 학대인 방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제 4 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분석의 틀

1.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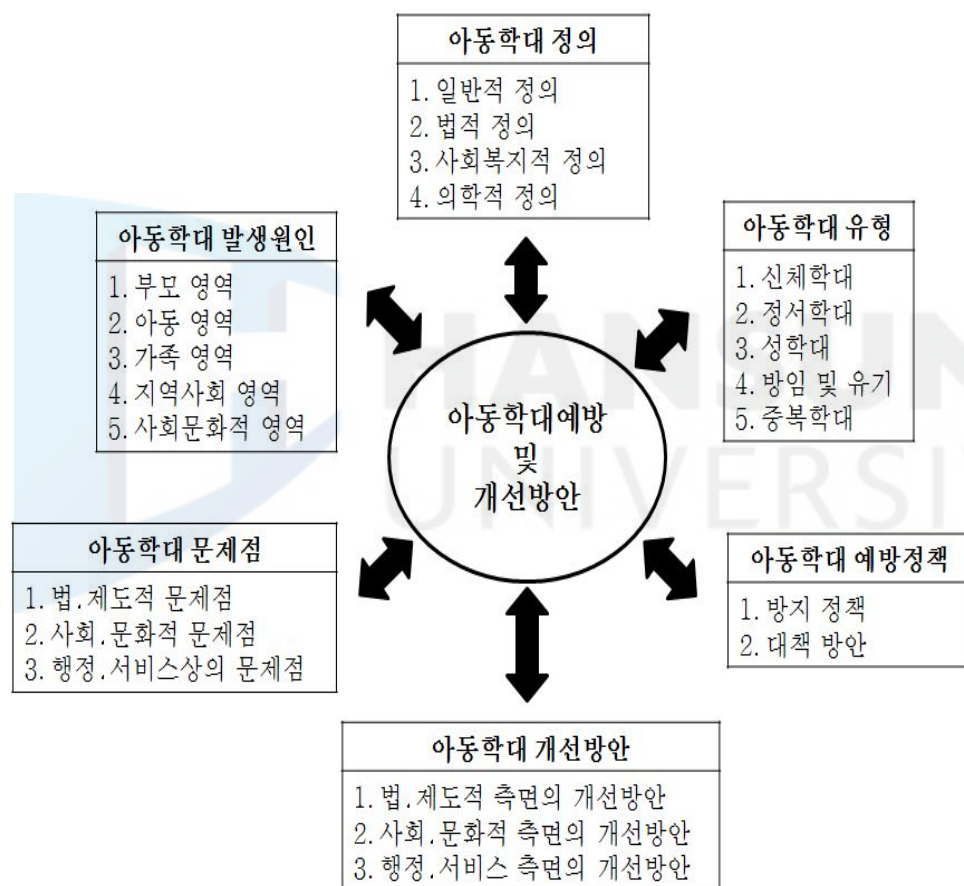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24) 홍미·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6, 2007, p.56.

25)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64.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를 정리하고, 발생경로를 부모, 아동, 가족,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그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및 유기, 중복 학대로 연구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서비스상, 행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예방정책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절차는 [표 2-4] 에서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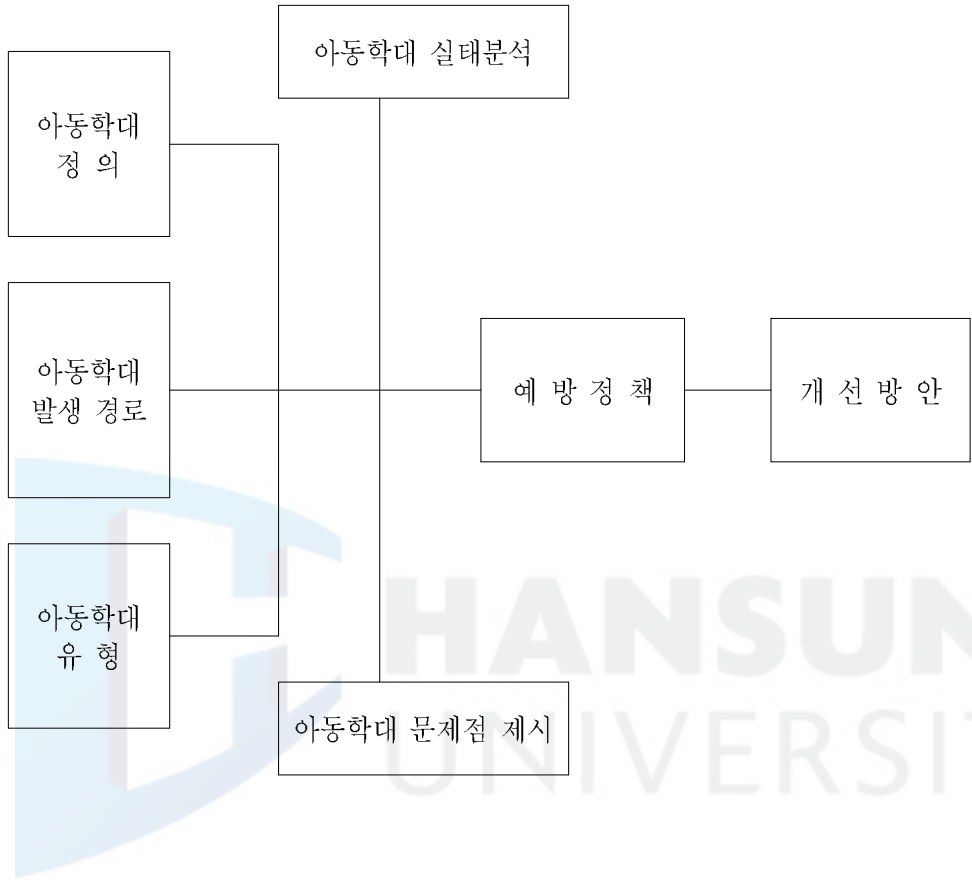
[표 2-4]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 연구 절차



위와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서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 정의, 발생 경로, 유형을 잘 분석하며,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표 2-5]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2-5] 본 연구 분석의 틀



제 3 장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및 평가

제 1 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2001년~2009년)와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통해서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전체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현황은 [표 3-1]과 같이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를 보였다. 2001년에 비해 2009년 신고건수가 약 2.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4%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부터 상담신고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에는 1.0%로 고, 2009년에는 2008년 상담신고 건수의 97.3%로 오히려 261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은 지난 9년간 신고접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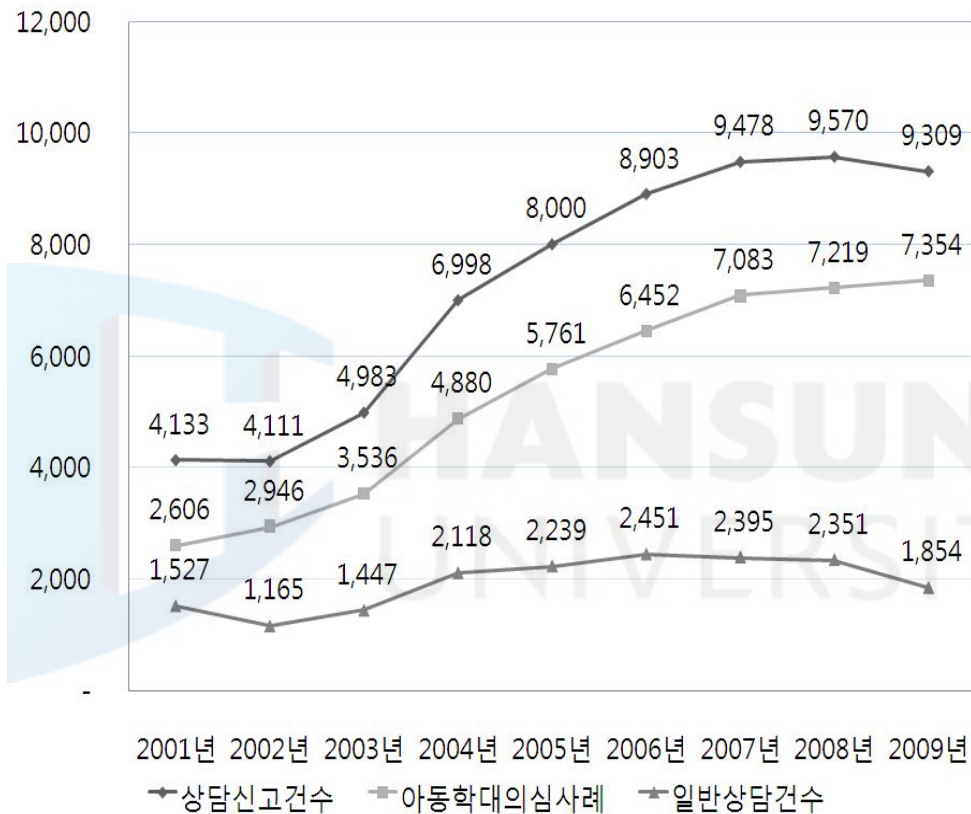
(단위:건)

	상담신고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건수
2001년	4,133	2,606	1,527
2002년	4,111	2,946	1,165
2003년	4,983	3,536	1,447
2004년	6,998	4,880	2,118

2005년	8,000	5,761	2,239
2006년	8,903	6,452	2,451
2007년	9,478	7,083	2,395
2008년	9,570	7,219	2,351
2009년	9,309	7,354	1,85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p.176.)

<그림 3-1> 연도별 상담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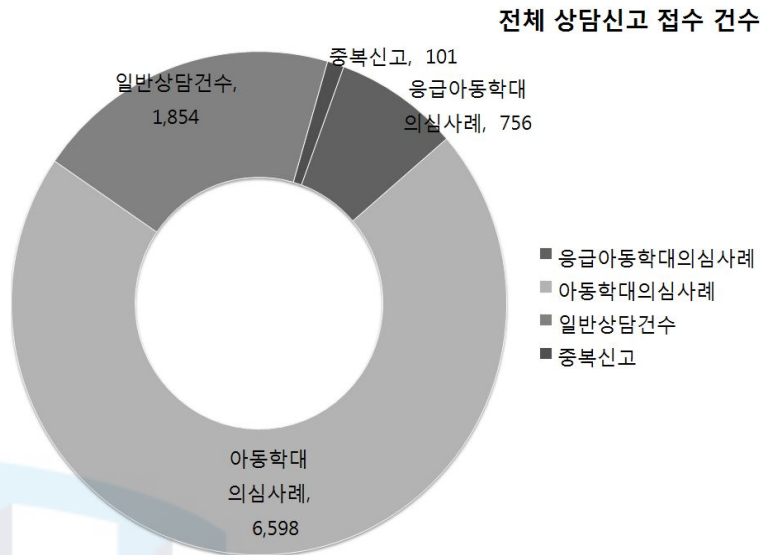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77.)

2009년 신고접수 건수는 총 9,309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7,354건(79.0%), 일반상담 신고접수 건수는 1,854건(19.9%), 중복신고접수 건수는 101건(1.1%)이었다. 전체신고접수 건수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5년과 대비하여 각각 16.3%, 27.6%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에 비해 182.2%나 증가하였다.

<그림 3-2>는 2009년 전체 상담 신고 접수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 전체상담신고 접수 건수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게서, p.54.)

상담신고 접수 추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에는 한 해 동안 18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가되어 아동학대 발견율과 학대가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체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한 반면, 전년 대비 상담신고 증가율이 감소한 2008년에는 단 한 개소도 추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2009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 증설 되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하반기에 이루어져 전체 상담신고접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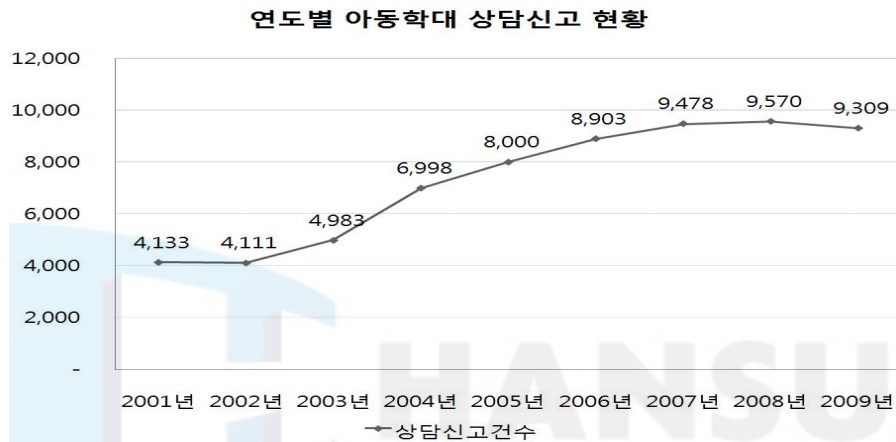
[표 3-2] 연도별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단위:건,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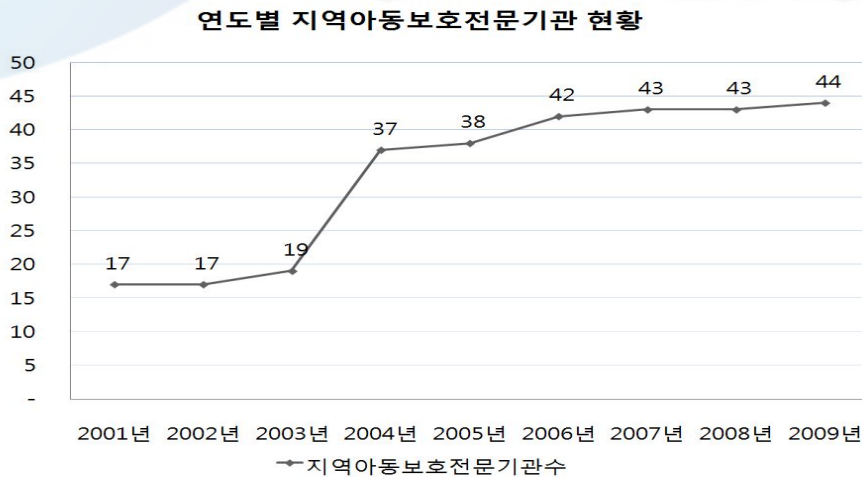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증가율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증가율			2	18	1	4	1		1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3.)

<그림 3-3> 연도별아동학대상담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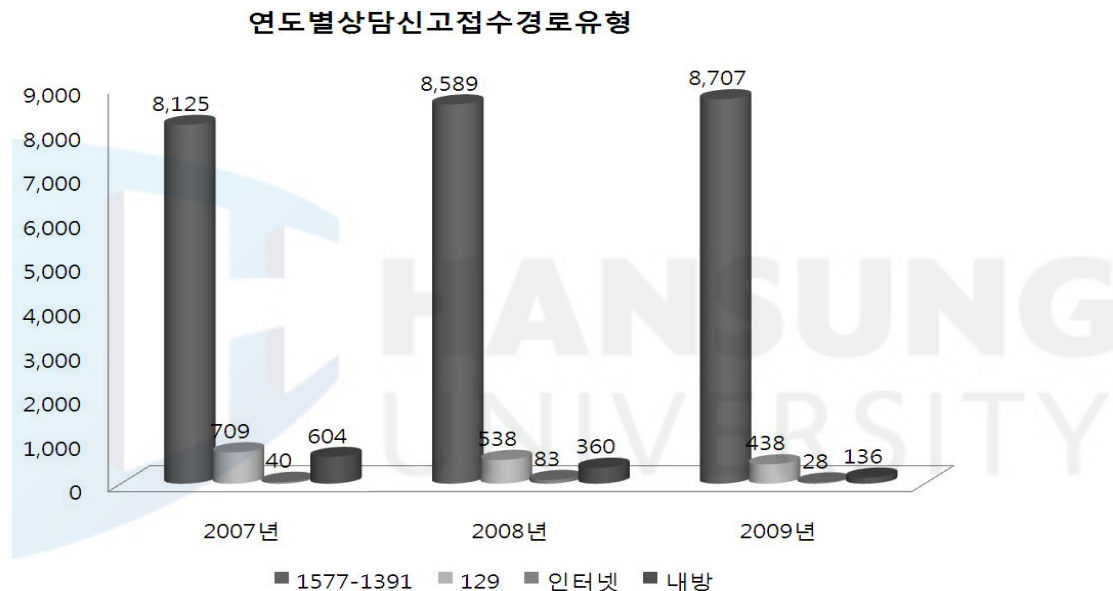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2007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번이 폐지되고, 129번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신고체제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129번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7년의 경우 709건으로 7.5%에 해당하였고, 2008년에는 538건으로 5.6%에 그쳤으며, 2009년에는 438건으로 4.7%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129번을 통한 신고건수의 감소는 전체 상담신고건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년간 홍보된 신고전화 1391이 1577-1391로 변경되면서 신고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신고전화번호가 길어져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연도별상담신고접수경로유형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2.)

[표 3-3] 연도별상담신고접수경로유형

(단위:건, %)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577-1391	8,125(85.7)	8,589(89.7)	8,707(93.5)

129	709(7.5)	538(5.6)	438(4.7)
인터넷	40(0.4)	83(0.9)	28(0.3)
내방	604(6.4)	360(3.8)	136(1.5)
계	9,478(100.0)	9,570(100.0)	9,309(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1.)

2) 신고자 유형

신고자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항에는 이들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기피할 경우 법적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신고율은 낮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39건으로 전체 신고자 7,354건의 31.8%로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5,015건으로 전체의 68.2%에 해당하였다. 신고의무자는 전체 신고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부족,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하는 제도 미비, 신고 후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인식이 낮다는 것은 큰문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²⁶⁾

[표 3-4]는 지난 9년간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표 3-4]에서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01년에 비해 2009년도에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건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

26) 강민성,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4.

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소속된 직장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거부적 반응,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해마다 교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 유형에서는 부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연도별 신고자 유형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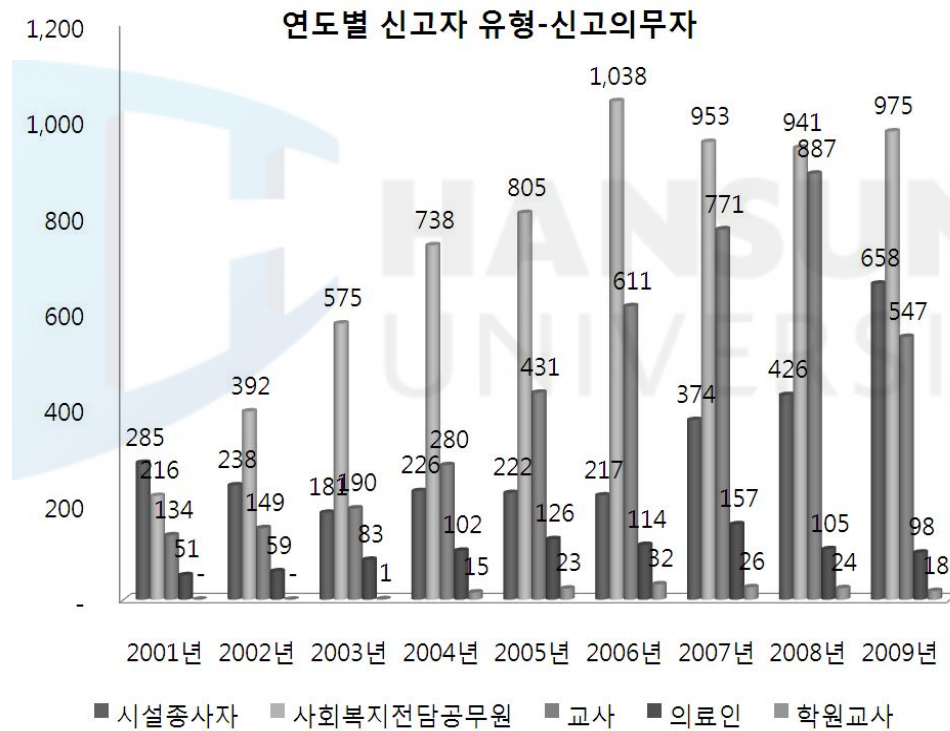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 고 의 무 자	시설종사자	285	238	181	226	222	217	374	426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6	392	575	738	805	1,038	953	941	975
	교사	134	149	190	280	431	611	771	887	547
	의료인	51	59	83	102	126	114	157	105	98
	학원교사	-	-	1	15	23	32	26	24	18
	소방구급대원	-	-	-	-	-	-	3	6	1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	-	-	-	-	-	-	35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	-	-	-	-	-	-	-	15
	보육시설종사자	-	-	-	-	-	-	-	-	76
	성매매피해시설 상담소종사자	-	-	-	-	-	-	-	-	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상담소종사자	-	-	-	-	-	-	-	-	15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	-	-	-	-	-	-	-	142
	소계	686	838	1,030	1,361	1,607	2,012	2,284	2,389	2,296
비 신 고	부모	772	591	673	990	1,073	1,165	1,294	1,311	1,356
	이웃, 친구	685	757	843	921	933	886	856	845	805
	친인척	241	242	367	373	481	500	471	502	468
	경찰	104	164	221	338	357	340	275	322	416

27) *2009년부터시설종사자항목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한부모가족복지시설상담소종사자,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로구분하여집계하였으며,유치원교사,교직원항목을신설함

의 무 자	종교인	-	36	49	47	74	99	77	54	54
	사회복지관련종사자	-	90	114	506	823	980	1,165	1,176	1,356
	낮선사람	-	-	4	114	80	148	88	70	71
	아동본인	40	56	52	65	80	71	50	73	88
	익명	-	11	13	13	41	26	11	61	8
	형제, 자매	-	-	-	-	-	-	-	-	34
	기타	78	161	170	152	212	225	512	416	359
	소계	1,920	2,108	2,506	3,519	4,154	4,440	4,799	4,830	5,015
합계		2,606	2,946	3,536	4,880	5,761	6,452	7,083	7,219	7,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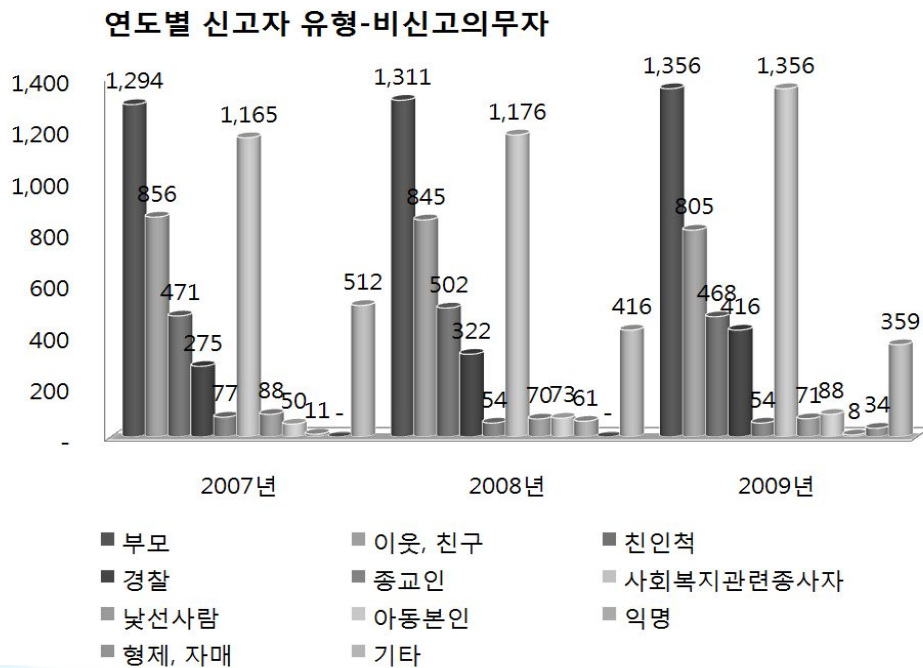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79.)

<그림3-6>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0.)

<그림3-7> 연도별 신고자 유형 - 비신고의무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 계서, p.180.)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1) 아동학대사례유형

아동학대는 각 유형별 단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학대의 비율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언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²⁸⁾

2009년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여러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학대가 2,238건(39.4%)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방임이 2,025건(35.6%), 정서학대가 778건(13.7%), 신체학대가

28)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6.

338건(5.9%), 성학대가 274건(4.8%), 유기가 32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의 아동학대 사례유형 통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북학대의 유형이 2001년 623건이 2009년 2,238건으로 359%나 증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방임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불안과 실직자의 증가가 아동학대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정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1(중북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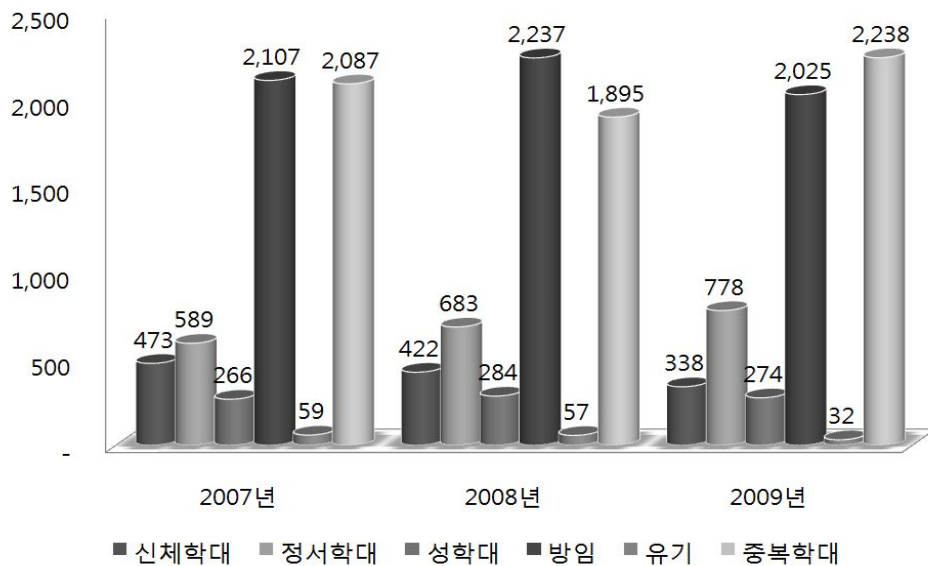
(단위:건, %)

연도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체학대	476 (22.6)	254 (10.3)	347 (11.9)	364 (9.4)	423 (9.1)	439 (8.4)	473 (8.5)	422 (7.6)	338 (5.9)
정서학대	114 (5.4)	184 (7.4)	207 (7.1)	350 (9.0)	512 (11.1)	604 (11.6)	589 (10.6)	683 (12.2)	778 (13.7)
성학대	86 (4.1)	65 (2.6)	134 (4.6)	177 (4.5)	206 (4.4)	249 (4.8)	266 (4.8)	284 (5.1)	274 (4.8)
방임	672 (31.9)	814 (32.8)	965 (33.0)	1,367 (35.1)	1,635 (35.3)	2,035 (39.1)	2,107 (37.7)	2,237 (40.1)	2,025 (35.6)
유기	134 (6.4)	212 (8.6)	113 (3.9)	125 (3.2)	147 (3.2)	76 (1.5)	59 (1.0)	57 (1.0)	32 (0.6)
중북학대	623 (29.6)	949 (38.3)	1,155 (39.5)	1,508 (38.8)	1,710 (36.9)	1,799 (34.6)	2,087 (37.4)	1,895 (34.0)	2,238 (39.4)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4.)

<그림 3-8>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1(중복학대 별도 분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 계서, p.184.)

[표 3-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2 (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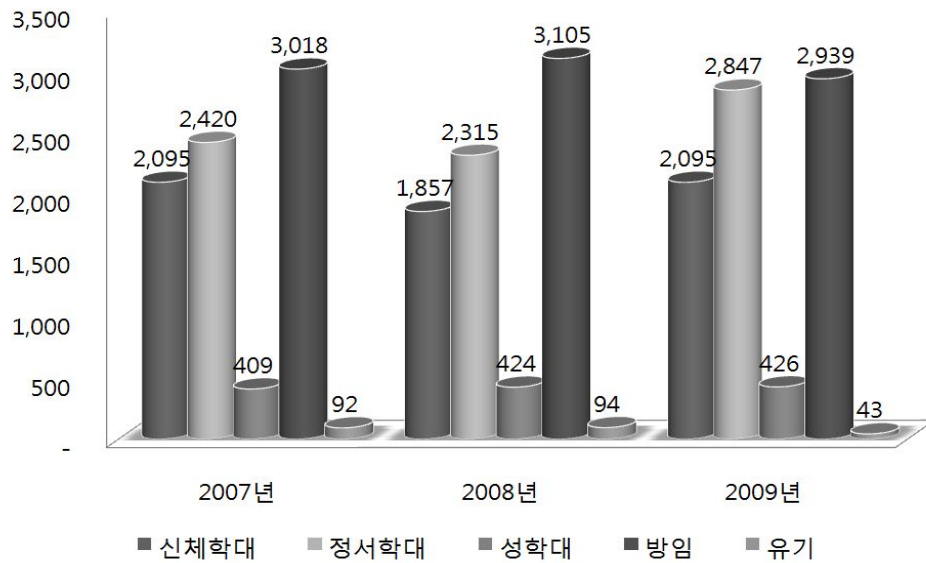
(단위:건, %)

연도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체 학대	890 (41.8)	1,039 (28.4)	1,315 (30.3)	1,587 (27.5)	1,728 (25.9)	1,827 (24.9)	2,095 (26.1)	1,857 (23.8)	2,095 (25.1)
정서 학대	192 (9.0)	961 (26.3)	1,172 (27.1)	1,680 (29.2)	2,034 (30.5)	2,182 (29.8)	2,420 (30.1)	2,315 (30.0)	2,847 (34.1)
성 학대	116 (5.4)	119 (3.2)	203 (4.7)	266 (4.6)	305 (4.6)	372 (5.1)	409 (5.1)	424 (5.0)	426 (5.1)
방임	797 (37.5)	1,329 (36.3)	1,514 (35.0)	2,071 (35.9)	2,416 (36.4)	2,842 (38.8)	3,018 (37.6)	3,105 (40.0)	2,939 (35.2)
유기	133 (6.3)	212 (5.8)	126 (2.9)	160 (2.8)	176 (2.6)	106 (1.4)	92 (1.1)	94 (1.2)	43 (0.5)
계	2,128 (100.0)	3,660 (100.0)	4,330 (100.0)	5,764 (100.0)	6,659 (100.0)	7,329 (100.0)	8,034 (100.0)	7,795 (100.0)	8,350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 계서, p.185.)

<그림 3-9> 연도별 아동학대사례유형2(중복학대미분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유형2 (중복학대 미분류)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5.)

2)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추이를 분석한 [표 3-7]에 의하면, 부자가정 이 평균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가정이 평균 2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모자가정이 지난 9년 동안 평균 1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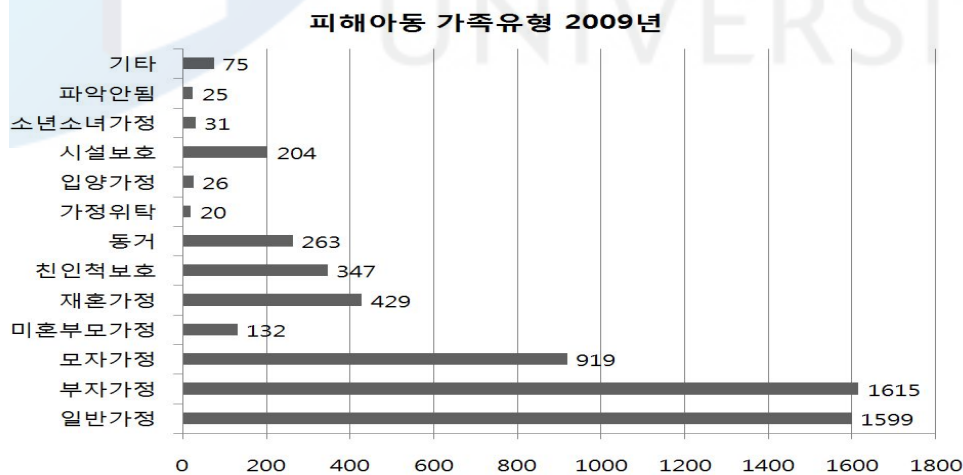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도 가족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가정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9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미혼부 모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16.2)
재혼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친인척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동거 (사실혼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입양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시설보호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소년소녀 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기타	25 (1.2)	40 (1.6)	29 (1.0)	76(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8.)

<그림 3-10> 피해아동가족유형(2009년도 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8.)

3)아동학대 발생장소

2009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분석해 보면 가정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4,955건, 복지시설 197건, 집근처또는길가가 167건, 어린이집이 67건, 친척집이 50건, 이웃집이 43건, 병원이 25건 그 외의 기타 여러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하였다. [표 3-8]는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나타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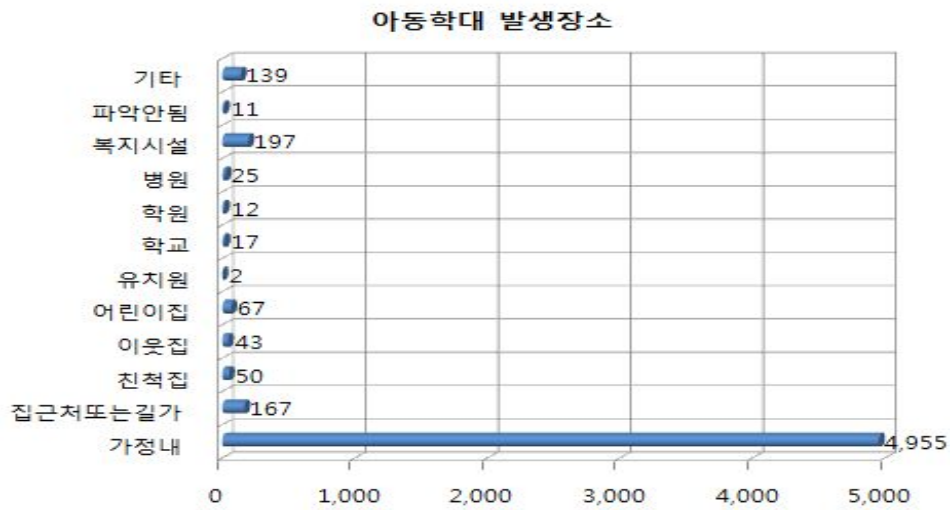
[표 3-8] 아동학대 발생장소(2009년 기준)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가정내	4,955 (87.2)
집근처또는길가	167 (2.9)
친척집	50 (0.9)
이웃집	43 (0.8)
어린이집	67 (1.2)
유치원	2 (0.0)
학교	17 (0.3)
학원	12 (0.2)
병원	25 (0.4)
복지시설	197 (3.5)
파악안됨	11 (0.2)
기타	139 (2.4)
총계	5,685(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00.)

<그림 3-11> 아동학대 발생장소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00.)

4)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표 3-9] 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학대가 2,095건 정서학대가 2,847건 방임이 2,939건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7,001건으로 83.8%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와 유기의 경우도 부모가 차지 한비율이 각각 45.8%, 69.8%로 가장 높았다.

[표 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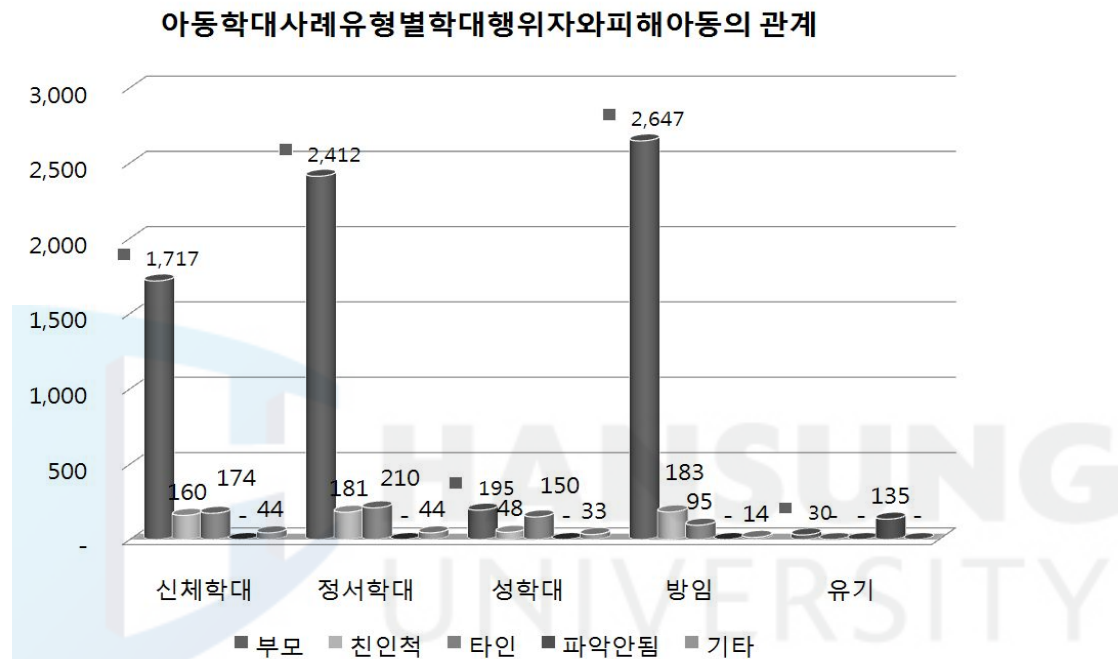
(단위: 건, %)

관계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부모	1,717 (82.0)	2,412 (84.7)	195 (45.8)	2,647 (90.1)	30 (69.8)	7,001 (83.8)
친인척	160 (7.6)	181 (6.4)	48 (11.3)	183 (6.2)	0 (0.0)	572 (6.9)
타인	174 (8.3)	210 (7.4)	150 (35.2)	95 (3.2)	0 (0.0)	629 (7.5)

파악안됨	0 (0.0)	0 (0.0)	0 (0.0)	0 (0.0)	135 (30.2)	5 (0.1)
기타	44 (2.1)	33000 (7.7)	33 (7.7)	14 (0.5)	0 (0.0)	143 (1.7)
계	2,095 (100.0)	2,847 (100.0)	426 (100.0)	2,939 (100.0)	43 (100.0)	8350 (100.0)
중복포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97.)

<그림 3-12>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98.)

[표 3-10]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단위:건, %)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 모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065 (28.3)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0.9)	52 (0.9)	75 (1.3)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4)	4,524 (81.1)	4,719 (84.5)	4,734 (83.3)
친 인 척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친조모	48 (2.3)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타 인	부모의 동거인	140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0)
	교사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학원 강사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시설 종사자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낯선 사람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위탁부									2 (0.1)
	위탁모									7 (0.1)
	소계	103 (4.9)	121 (4.9)	217 (7.4)	368 (9.5)	372 (8.0)	423 (8.1)	529 (9.5)	394 (7.2)	465 (8.2)
파악안됨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계		2,108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86.)

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표 3-11] 은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크게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아동학대 총 29,655건 사례 중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9,3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그중 유형별 건수는 신체학대가 2,660건 정서학대가 3,327건 방임이 3,101건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6,796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성문제가 있는 경우 성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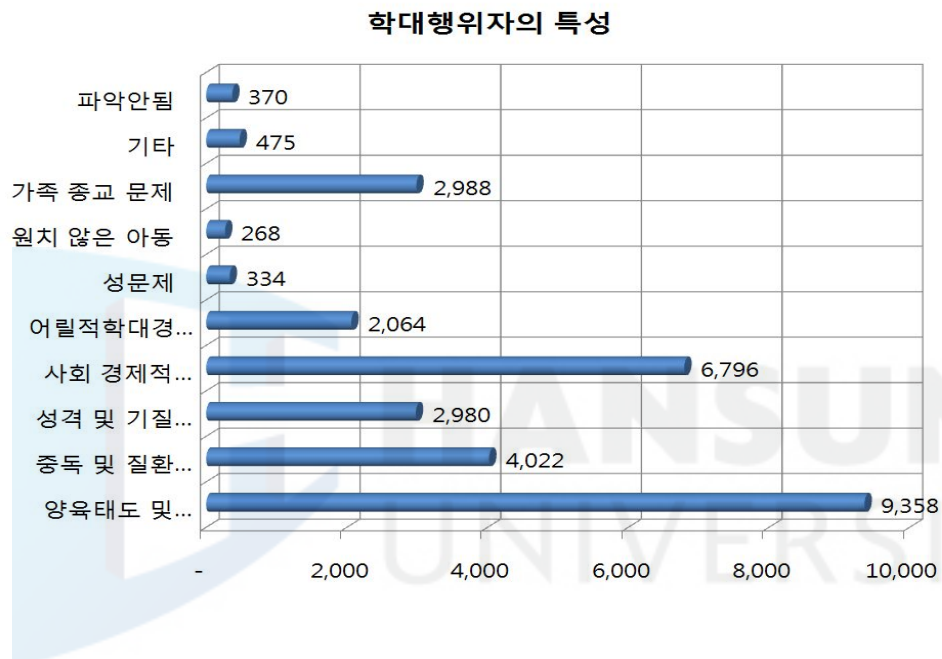
(단위: 건, %)

유형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660 (32.8)	3,327 (30.5)	244 (22.1)	3,101 (32.8)	26 (25.7)	9,358 (31.6)
중독 및 질환문제	1,096 (13.5)	1,538 (14.1)	151 (13.6)	1,229 (13.0)	8 (7.9)	4,022 (13.6)
성격 및 기질문제	983 (12.1)	1,306 (12.0)	82 (7.4)	599 (6.3)	10 (9.9)	2,980 (1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621 (8.4)	2,249 (20.6)	149 (13.5)	2,763 (29.3)	14 (13.8)	6,796 (22.9)
어릴적학대경험 및 폭력성	681 (8.4)	907 (8.3)	92 (8.3)	379 (4.0)	5 (5.0)	2,064 (7.0)
성문제	42 (0.5)	67 (0.6)	182 (16.5)	43 (0.5)	0 (0.0)	334 (1.1)
원치 않는 아동	86 (1.1)	109 (1.0)	4 (0.4)	64 (0.7)	5 (5.0)	268 (0.9)
가족,종교문제	779 (9.6)	1,205 (11.0)	80 (7.2)	912 (9.7)	12 (11.9)	2,988 (10.1)

기타	92 (1.1)	138 (1.3)	96 (8.7)	214 (2.3)	5 (5.0)	475 (1.6)
파악안됨	61 (0.8)	61 (0.6)	26 (204)	136 (1.4)	16 (15.8)	370 (1.2)
계	8,101 (100.0)	10,907 (100.0)	1,106 (100.0)	9,440 (100.0)	101 (100.0)	29,655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제서, p.99.)

<그림 3-13>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피해 아동성별

[표 3-12] 에서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을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남아 51.4% 여아 48.6%, 정서학대는 남아 49.1% 여아 50.9%, 방임은 남아 53.1% 여아 46.9%로 성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학대사례는 여아가 390명으로 성학대피해 아동의 91.5%를 차지하여 남아보다 10배이상으로 많이 발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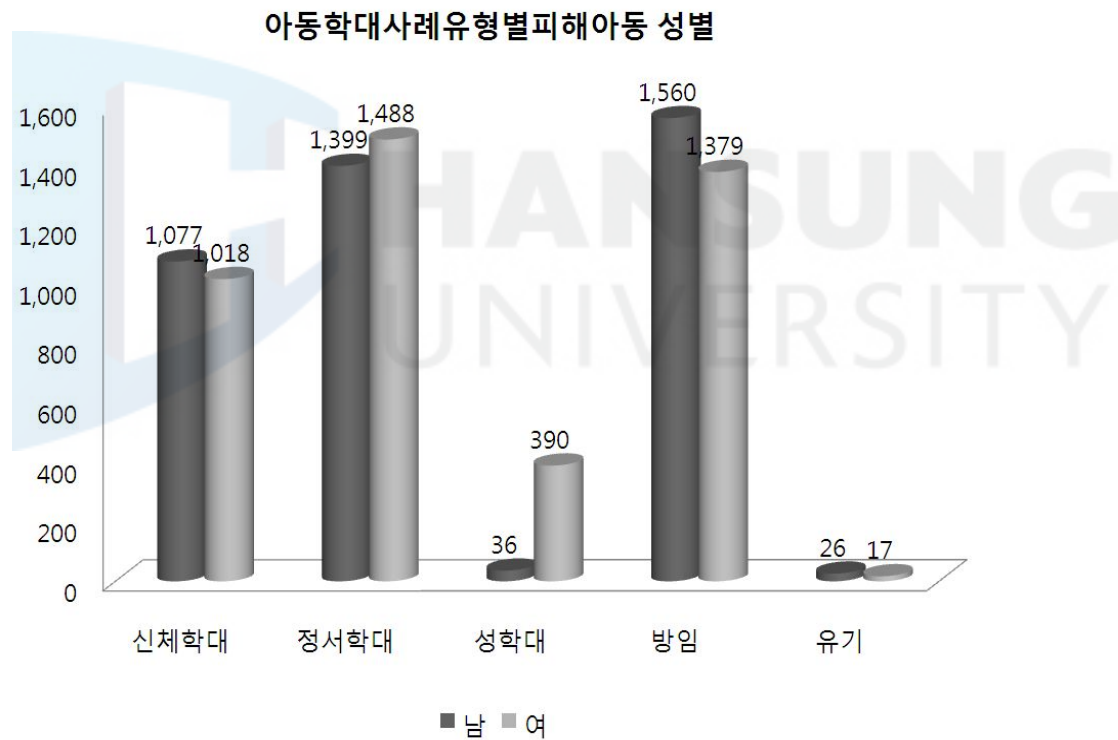
[표 3-12] 유형별피해 아동성별

(단위:건, %)

성별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남	1,077 (51.4)	1,399 (49.1)	36 (8.5)	1,560 (53.1)	26 (60.5)	4,098 (49.1)
여	1,018 (48.6)	1,488 (50.9)	390 (91.5)	1,379 (46.9)	17 (39.5)	4,252 (50.9)
계	2,095 (100.0)	2,847 (100.0)	426 (100.0)	2,939 (100.0)	43 (100.0)	8,350 (10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94.)

<그림 3-14> 유형별피해아동성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94.)

제 2 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그것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며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대의 경험은 즉각적인 상처와 스트레스, 그리고 충격을 남기며 아동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한다.

학대받는 아동들은 학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악몽과 수면장애와 같은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래도록 지속된다.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란 일상적인 경험 밖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상이나 꿈, 감정들을 통해 그 충격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 경험됨으로써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족내 성학대의 경우에 남는 후유증은 특히 심각하다. 성학대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격 또는 염증이 아동에게 반사되어 성학대당한 것을 '자신의 잘못' 때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학대자와 자신을 분리하기 어렵고, 희생자와 학대자의 역할을 떠나 아이덴티티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성학대의 또 다른 후유증은 사건의 노출 이후 과정이 당황스럽다는 점이다. 아동은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형사범이 된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결국 집과 가족을 잃게 되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이미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또한 성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또래들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혼란을 겪는다. 성적학대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대로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시도하지만 결국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이질감,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1. 법·제도적 문제점

1)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조항이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를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한 법적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적문제점으로는 신고의무자제도와 친권 그리고 아동증원의 신빙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있다.

(1) 신고의무자 제도

신고의무자에 관련된 쟁점은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시 제재조치 그리고 신고자의 신변보호로 나누어 보았다.

① 신고의무자의 범위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 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무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로는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비할 뿐 아니라 [표 3-4]에서와 같이 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나 66.9%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3.1%로 전체신고자의 1/3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② 신고의무 시 제재조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낮은 이유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신고율이 낮다.

③ 신고자의 신분보호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신고할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게 될 위험 부담, 신분 위협 등이다. 아동복지법 26조 3항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가 사안이 심각해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질 신문 과정에서 신고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법적 고소로 이어질 경우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경로로 신원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예상되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

(2) 친권

아동복지법 제27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나 경찰이 신고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에 격리보호하거나 제10조에서 정한 일정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제30조에서는 필요한 조사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해부모가 친권자일 경우 응급조치에 반대하면 아동의 격리보호를 강제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에도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제한이나 접근 금지 등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²⁹⁾ 명백히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시보호기관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가해친권자의 친권주장에 보호가 중단되어 다시 그 가정으로 되돌아 갈수밖에 없고 그런 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친권에 관한 쟁점을 응급조치 단계의 친권 문제, 보호조치 요청 단계의 친권문제, 일시위탁과정의 친권문제, 보호 조치 및 귀가조치 과정의 친권 문제로 나누어 보았다.

29)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2.

① 보호조치 요청 단계의 친권문제

아동복지법 제27조 2항,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보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반대하거나, 조치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조치 의뢰시 부모의 아동일시보호동의서, 양육권포기각서, 시설입소동의서등을 받아 내어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³⁰⁾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의 동의서나 각서 등을 받는 것은 지자체장이 시설입소를 결정하기위한 근거의 하나이고 부모들의 저항과 소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하다. 설사 부모에게 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현실적인 행정집행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② 응급조치 단계의 친권 문제

현장 출동한 경찰이나 보호기관 직원이 응급격리보호를 시도할 때, 부모가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 경찰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친권자가 응급조치에 반대하면 아동의 격리 보호를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는 현장 출동한 경찰이나 보호기관 직원에게 상황파악과 응급조치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다보니 이들의 전문가적 판단이나 소신, 의지가 없이는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③ 일시위탁과정의 친권문제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보호조치결정이 나기 전까지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도 부모가 아동의 귀가를 요청 할 경우에도 시비가 발생한다.

④ 보호 조치 및 귀가조치 과정의 친권문제

시설보호조치 후 친권자가 아동의 귀가를 요청 할 경우 보호기관의 반대에도 친권자의 횡포와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려워 아동이 귀가되는 경우

30)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 통권 제24호』, 2005, p.19.

가 많다. 또 가정위탁 경우에도 약정한 위탁경우에도 불구하고 귀가요청을 할 때 위탁부모에게 법정 후견인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친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일선 실무자는 이에 대해 보호가 법원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므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³¹⁾ 고발된 부모가 불기소 내지는 불구속 판결 후 친권을 내세워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 할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으로는 이를 제제 할 수 없다고 한다.(오정수 외, 2007)

(3)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 실태에서 보았듯이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행위자의 80% 이상이 친부모 내지는 양 · 계부모이다. 물론 심각한 학대와 방임사례로서 고소 ·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4~5%정도이지만 피해아동의 문제가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피해아동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동복지법제28조에는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인의 선임 조항이 있다. 즉,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조사 및 법원 심리과정을 잘 겪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취지일 뿐이다.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수사나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때에 아동의 입장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기소가 가능하도록 수사나 심리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때로는 피해아동의 입장에 서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수사와 법원재판과정에서 아동 성학대 전담검사제, 진술녹화실의 마련 등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31) 이호균, 전게서, p.21.

어 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은 반복되는 진술요구와 성인 가해자 중심의 신문방법 및 조사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재차 학대를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 보전 신청에 의해 1~2회 진술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야기되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이 친권자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아동 양육태도나 의식의 변화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만 처벌조항만 있을 뿐이다. 아동학대사건은 속성상 반복적이고 권력적이므로 일회적인 벌금형으로는 그다지 좋은 대처방안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대자의 상담수강과 교육의 참여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1) 아동학대 대책을 위하여 먼저 아동복지 법령에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성적학대에 관하여 한국문화와 풍토에 맞는 내용과 범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아동복지법 제 18조(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고발대책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고발에 대한 법적 과정 및 연관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에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

의 변화를 시도하여 아동학대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4)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연구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그 효과성이 높으리라 판단된다.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빈곤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와 아동학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7)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아동복지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세칙이 마련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아동 학대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훈련·양성되어야 하겠다.

2. 사회·문화적 문제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통계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우리 문화에 적절한 사회복지학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기존의 처벌 지향식의 개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도가 급선무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고체계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는 방법 또한 아동보호제도의 기능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로 여겨진다.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 한국적 상황을 주목해 볼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첫째.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들과 가까이, 또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의사 등에게는 아동학대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넷째.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국민적 인식 제고해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치료기관 등이 설립되고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공교육, 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긴급전화 홍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

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1조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익 보호 신고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1391를 긴급전화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으로 보다 복잡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전화(국번 없이 1391)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부재로 인하여 아직 긴급전화의 운영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학대받는 아동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공서나 병원, 학교 등에 홍보물 부착을 통하여 긴급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이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대부분 드러나지 않으며,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의무

자들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두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와 신고 이행 시에 따른 문제점 제거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동과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신고의무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신고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24시간 내 미신고시 대만화폐 6,000원 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42개 주 중 30개 주에서는 신고의무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최소 벌금에서 최고 6개월간의 구속 혹은 면허정지 등을 가능케 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 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신분 및 신변보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주 활동 장소는 가정과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중적인 보호 장치 즉 신고자를 위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행정·서비스상의 문제점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 여건이나 전체 아동인구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각 시·도 별로 1개소씩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각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인구, 행정구역 등의 편차가 심각하다. [표 3-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지역 및 도시 편차가 큰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과 피해아동과 학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아동학대사례의 현황 분석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2)

[표 3-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09. 12. 31 현재)³³⁾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 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 시설		아동 상담소	전용 시설	개인 양육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39	3	25	352
서울	46	3,239	33	2,741	2	65	1	80	3	74	5	163	2	116	3	0	5	48
부산	22	2,032	19	1,967	0	0	1	30	1	30	1	5	0	0	4	0	2	32
대구	22	985	18	888	0	0	1	37	2	38	1	22	0	0	3	0	0	0
인천	11	721	9	693	0	0	0	0	0	0	2	28	0	0	6	1	0	0
광주	11	765	9	679	0	0	0	0	1	26	1	60	0	0	3	1	0	0
대전	13	668	11	506	0	0	1	150	1	12	0	0	0	0	4	0	1	22
울산	1	118	1	118	0	0	0	0	0	0	0	0	0	0	1	0	0	0
경기	32	2,015	27	1,863	0	0	3	64	0	0	2	88	0	0	6	0	0	0
강원	10	517	9	495	0	0	0	0	0	0	0	0	1	22	4	0	5	73
충북	12	771	10	730	0	0	1	27	1	14	0	0	0	0	0	0	1	20
충남	15	849	14	819	0	0	0	0	1	30	0	0	0	0	1	0	0	0
전북	16	948	14	860	0	0	1	70	1	18	0	0	0	0	2	0	1	28
전남	23	1,440	21	1,392	0	0	1	28	1	20	0	0	0	0	0	0	3	39
경북	16	946	15	944	0	0	0	0	0	0	1	2	0	0	0	0	5	67
경남	25	1,244	24	1,216	0	0	1	28	0	0	0	0	0	0	2	1	1	7
제주	5	328	5	328	0	0	0	0	0	0	0	0	0	0	0	0	1	16

아동학대에 관한 서비스 상의 문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부족, 부모교육의 비활성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 양육

32)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58.

33) 보건복지부, 『201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p.1.

체계 부족이 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해마다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부터는 신고건수의 증가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소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보면 전국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1개 설치되어 있고, 43개의 지역아동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아동인구 수 대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매우적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을 증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으로 학대아동에 대해 개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우리가 방문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신고 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을 비롯한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명확한 역할 구분 없이 상담원 1명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1577-1391 콜센터 업무도, 신고업무만 받는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낮의 업무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하고, 밤에는 당직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콜센터 업무를 보고 있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아동학대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 역할 구분 없이 상담원 1명이 모두 수행하고 있는 체계이므로, 각 역할에 따른 상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상담원의 업무 부담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업무가 세분화된 팀을 구성하고, 팀 안에서 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부모교육의 비활성화

앞에서 보듯이 학대 행위자의 80~90%는 아동의 부모들이다. 또한 그 중의 과반수 이상이 30~40대의 남성 학부모들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30~40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30~40대의 남성들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학교’와 같은 시간을 개설하고, 그 시간을 통해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법이나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미혼 남녀나,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미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보이는 특성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심지어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양육 태도에 맞추므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부모 교육은 매우 활성화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 양육 체계 부족

앞의 아동학대 현황에서 보듯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시킬 때 시설보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양육체계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대부분 학대로 인한 신체적, 행동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

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는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치료시설조차 부재하다. 이는 곧,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가장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애아동, 성학대 피해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특수 위탁가정 혹은 그룹홈이 제공되고 있어서, 다양한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일반 요보호 아동과 달리 공격적이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여러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과 따뜻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교육받은 위탁가정을 발굴해야하고, 전문 그룹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평가

1. 실정법적 근거

우리 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은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 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고 하였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고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금지 행위로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반 사유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동법 제40조의 제2항).

3)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

여 종합적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자문기구다(동법 제4조의 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들로 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은 동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두며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지역사회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동법 제6조 제1항). 아동위원은 명예직이며 그 활동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6조 제5항).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조치

아동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 보호자 및 국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또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2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하지만,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5)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법

아동복지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 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소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을 공익법인 또는 비 법인에서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시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들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동법 제19조).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 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 중등학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거나 외면했을 경우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아동학괴죄의 부작위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형법 제274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등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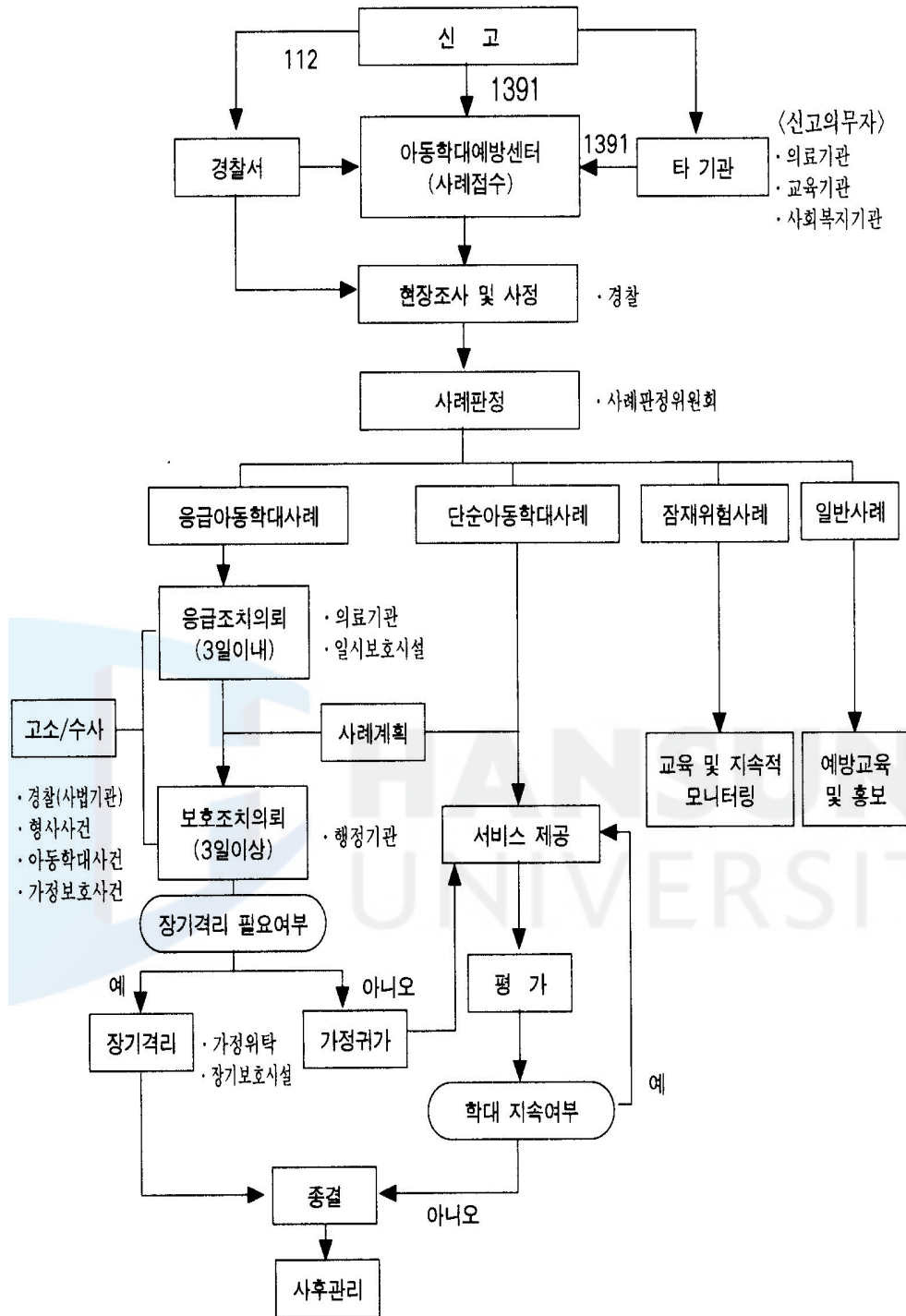
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업무흐름

일반적인 예방대책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전달되기보다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통합적으로 제공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도 예외는 아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예방, 신고접수, 조사, 보호, 더 나아가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은 다양한 관련기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표 3-14]와 같이 사례접수단계에서는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이 1391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한다. 이후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후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표 3-14]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³⁴⁾



34) 정운수, 이정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3호』, p.236.

제4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 1 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조항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 의무자를 지정만 해 놓았을 뿐 이들에 대한 평소에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나 미 신고 시의 조치(처벌, 무고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차 후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이들 각각 계층의 실정에 맞는 꾸준한 교육과 이들이 아동학대 실태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법에서도 이들이 미 신고 시나 혹은 무고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로 이들이 신고 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2) 응급조치 의무 조항

첫째,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조항(제1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 세부 매뉴얼(2000)에는 최대 24시간 이내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상에는 이러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법률의 중요성을 희미하게 한다.

둘째, 응급조치 의무에 있어(제2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사법 경찰관리자들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없어 후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우려도 있다.

셋째, 응급조치의무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경우라도 그 가정이 조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출동이나 조치에 있어 세부적인 조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들과 사법 경찰관리자들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더불어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아동학대 관련 규정 조항

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들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구체성은 신고를 받고 가정조사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학대에 관련된 정의 및 조사방법 항목 등이 표준화된 지표를 기준이 있다면 아동학대를 판별할 때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개념과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경우나 사례를 판별해야 할 때 공통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친권상실제도의 활성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제13조, 민법 제924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신고 청구와 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아동학대의 사례에 있어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취해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 민법의 '친권상실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친족, 검사나 시장, 도지사 등이 법원에 친권 박탈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권 상실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벌칙 규정 조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자녀를 때리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밥을 안 주고 학교에 안 보내는 일을 반복하다 적발된 부모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 상담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원하는 부모에게만 교육이나 상담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그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보호체계

2009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2001년보다 125.2% 늘어나 예전에 비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기 가정에 대한 중심성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또한 자녀에 대해 그릇된 사고를 지닌 부모 역시 많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학대 역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개의 가정의 문제로 축소시키기가 쉽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에 무지하거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의 방지정책

1) 아동복지법

198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학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다만 제 18조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가운데 하나인 제 9항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학대의 유형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처분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규정의 전부이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나 서비스 등의 배려가 없으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학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돕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이에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사업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 되고 있는 상태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안

1996년 여성계, 민간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들은 가정폭력을 다른 폭력과 똑같은 범죄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간의 사회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과정과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간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법으로 제정된다하더라도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동학대는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폭력방지법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아동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 전

문가들의 견해이다.

4.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우리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 협약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러한 보호 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을 포함하며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니세프, 1992)

1)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와 동시에 학대자, 피학대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 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기관들의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 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

이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거나 아동을 다루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치료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의료관계인들, 약사, 학교인사들,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포함된다. 직무상 아동학대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 사회복지기관의 육성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정하거나 육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전문기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심층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개인상담, 집단지도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필요한 자원과 지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폭력적인 스트레스나, 부모역학을 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들,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애정 결핍이나 무관심자, 또는 생활 무능력자 등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 방안

1.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국민 인식의 제고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

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를 허용치 않는 공중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중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아동권익옹호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체가 정부차원, 민간차원 모두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

아동학대만을 전담하는 정부차원의 기구는 없으며, 민간차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전문기관, 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조사 연구사업, 부모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전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국제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의 교육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범 국민 홍보 및 계몽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교육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연수과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필수 항목으로 제도화 시키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

[표 4-1]은 연도별 홍보방법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홍보 전달은 아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3호』, 2008, p.43.

[표 4-1]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³⁶⁾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쇄물홍보	브로셔(장)			100,090	154,331	160,139	224,651	240,281	259,215	249,294
	포스터(장)			10,234	11,549	30,490	38,584	105,097	49,655	47,064
	전단(장)			75,823	130,022	143,337	136,161	150,610	220,666	197,226
	기타(개)			106,604	203,172	226,686	2,208,941	367,983	472,338	572,925
언론	방송(회)			97,960	125,572	33,786	12,285	16,644	8,744	10,036
	신문(회)			3,501	4,077	4,933	6,076	5,698	4,924	2,970
	잡지(회)			4,015	211	421	231	917	1,154	1,307
인터넷(일)				141,616	115,311	86,604	75,638	135,524	570,591	444,223
캠페인(회)				376	671	884	945	952	1,238	1,086
전체기타(회)				61,351			52,547	108,311	84,560	796,422
계		18,146	149,814	601,570	744,916	687,280	2,756,059	1,133,017	1,673,085	2,322,553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93.)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사례에 친부모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생활변화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는 학대부모에 대해 사회적 기술훈련을 사용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가족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치료의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다.³⁷⁾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지원 및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36) *2001년, 2002년은 홍보사업 현황이 세부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음

37)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2.

[표 4-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³⁸⁾

(단위:회(명))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	아동			1,172 (61,453)	1,465 (70,799)	2,139 (166,171)	2,892 (158,467)	5,716 (319,602)	6,940 (459,583)	9,295 (505,413)
	부모			49 (1,249)	244 (9,471)	329 (11,788)	506 (18,182)	595 (20,715)	620 (21,820)	612 (19,263)
	경찰			8 (616)	97 (925)	56 (1,461)	36 (623)	19 (1,107)	11 (834)	146 (16,439)
	자원봉사자			60 (1,609)	450 (3,047)	1,277 (6,900)	900 (6,983)	839 (9,037)	940 (7,314)	686 (5,118)
	기타			316 (12,837)	381 (9,929)	626 (14,728)	549 (29,362)	896 (36,944)	2,350 (38,086)	2,601 (38,401)
신고의무자	교직원			89 (4,382)	280 (5,895)	308 (6,304)	372 (10,793)	712 (17,300)	964 (15,830)	547 (15,765)
	의료인			14 (942)	40 (1,356)	46 (439)	30 (878)	27 (1,341)	1,577 (3,119)	226 (1,052)
	시설종사자			104 (2,472)	218 (7,037)	315 (11,996)	286 (13,197)	320 (12,692)	2,697 (26,704)	3,720 (36,917)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75 (2,426)	159 (2,422)	88 (1,689)	92 (2,846)	68 (2,055)	288 (2,470)	460 (1,524)
	소방·응급 대원							20 (1,152)	20 (741)	28 (1,024)
	학원 교사							6 (1,566)	50 (7,190)	10 (2,515)
세미나				25 (1,833)	24 (2,175)	64 (3,213)	38 (3,258)	48 (2,432)	43 (6,178)	32 (3,643)
계		1,603 (33,345)	1,495 (71,006)	1,912 (89,819)	3,358 (113,076)	5,248 (224,689)	5,701 (244,589)	9,266 (425,943)	16,503 (589,839)	18,363 (647,07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90.)

아동학대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서비스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보호서비스의 체계화를 이해서는 우리 문화와 가치에 부합되는 아동 보호 제도를 개발이라는 문제는 보다 치밀한 연구와 의식 조사를 거쳐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⁹⁾

38) *2001년,2002년교육사업현황이세부항목으로구별되어있지않음

39) 주재홍,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1.

[표 4-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건, %)

서비스		2009년이전신고사례	2009년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8,665(19.0)	24,087(17.5)
	집단상담	2,830(1.9)	3,946(2.9)
	기관상담	19,806(13.2)	28,827(20.9)
	주변인상담	1,327(0.9)	1,695(1.2)
	소계	52,628(35.0)	58,555(42.5)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3,972(2.6)	2,972(2.2)
	통원치료	1,569(1.1)	1,849(1.3)
	소계	5,541(3.7)	4,821(3.5)
심리치료 서비스	심리검사	361(0.2)	1,827(1.3)
	놀이치료	4,762(3.2)	2,461(1.8)
	미술치료	3,744(2.5)	3,154(2.3)
	가족치료	14490.1)	127(0.1)
	기타치료	3,495(2.3)	1,904(1.4)
	소계	12,506(8.3)	9,47396.9)
학대예방교육		893(0.6)	1,316(1.0)
학습지원		19,943(13.2)	13,705(10.0)
일시보호서비스		47,362(31.4)	41,557930.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5,015(3.3)	3,004(2.2)
	사회복지관의뢰	91690.6)	415(0.3)
	수급권연결	65(0.1)	191(0.1)
	소계	5,996(4.0)	3,610(2.6)
고소고발지원서비스		5,786(3.8)	4,458(3.2)
기타		34(0.0)	119(0.1)
계		150,6899100.0)	137,614(100.0)

중복포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계서, p.121.)

제 3 절 행정·서비스 측면의 개선 방안

1. 아동보호전문기관⁴⁰⁾ 직원에게 준사법적 권한 부여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는 다만 조사를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 내지는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자 이른바 참고인에 불과하여 아동학대방지 및 보호라는 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산림 등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조건 아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동학대자나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쉽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학대 사건을 지휘,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노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이혼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부자 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비, 아동양육비, 보육료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 곤란하다.

40) 아동복지법상의 명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칭만으로도 기관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보내기 전 일시보호와 긴급한 상처나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역정신보건센터, 보건소, 협력병원 등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대리양육자를 연결하여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등을 활용하여 학대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0년이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전국 광역도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74,684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55,243건에 이른다. 2001년 4,13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0년 9,19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부에서 의심이 가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회가 놀랍게 성장 했었지만 아동학대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아동학대를 나와는 상관 없는 일로 여기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조차 아동학대가 단지 비정상적인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이며 남의 가정사라고 치부하곤 한다.⁴¹⁾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조점숙, 2002). 국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나가고, 학대사례 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

41)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24호, 2011년 5월 24일자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우리사회의 공통된 가치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주변 아동들과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학대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에 굴레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아동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동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내학위논문

- 강민성,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연구」,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서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영주, 「아동학대 인식에 기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금희,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영미, 「아동학대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혜원, 「가정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주재홍,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 철, 「한국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홍전희,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3호』, 2008. 9.

박은순,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성」, 『대한간호 제28권 1호』, 1999.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 통권 제24호』, 2006.

정용충,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5호, 2001

정운수, 이정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3호』

한국청소년연구소,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소 자료집』, 1994.

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 제1호』, 1993.

홍미·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 6.

황옥경,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제8권 제3호』, 2004.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0.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9.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8.

보건복지부아동안전권리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보건복지부아동안전권리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3년』, 2004.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년』, 200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1년』, 2002.

보건복지부, 『201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1.

3. 단행본

노병일,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8.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1.

이소희,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2003.

주수길·김지연,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2004.

허남순, 『한국아동복지학』, 서울 창간사, 1993.

4. 기타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24호, 2011년 5월 24일자

ABSTRACT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Oh, Jin-Seok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f there's tension in the family which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and the most valuable inheritance of mankind, it won't be to expect the healthy society or nation which are created on the basis of a family. The child abuse is the common case of deprivation of the children's right by adult including parents, and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uses negative effect on soc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respect of that the victim, who are children, can't protect themselves and perpetrators are guardians or adults whom children trust and rely on. Especially, every type of child abuse may remain in their mind as a bruise which could destroy their self-respect and spirit of independence and hard to cure in their lifetime.

Because Child abuse appears to be formed variously as the family, socie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 I classified the type of child abuse into physical abuse, mental abuse, sexual abuse, neglecting, abandonment etc for the right analysis and referred to existing research result, all sorts of reports, seminal materials,

academic journals etc.

Child abuse may cause a mental retardation and a speech disorder as well as a psychological and mental aftereffect such as a developmental disability, problems on personal relations, and an aggressive and destructive behavior. And also, there's high possibility of connecting into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deviation and crime in the adolescence perio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child abuse is shown as below.

First, the concept and the type of child abuse have to be established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Second,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standard of punishment have to be strengthened in the aspects of law and system.

Third, the cause of child abuse have to be eliminated and a sheltered housing has to be expanded i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orth, the prevention project for child abuse victims and parents has to be promoted and the posteriori protection system has to be created in administrative and service aspects.

To protect from child abuse, the financial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has to be secured and the changing public attitude on abuse is necessary because solving the problem of child abuse is for a matter of individual as well as for the future of our society.